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10.22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최영준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작업장 서측 인접 이면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 지주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풍압 등의 외력으로 인한 전도관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즉시 보완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작업장 주변 근로자 통로에 전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구부 및 굴착단면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고, 위험표지 테이핑만이 설치되어 있어, 적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니 근로자가 몸을 기대거나 지지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없도록 튼튼한 구조의 난간으로 교체하고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 001(안전난간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건설기계 작업장 주변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표준신호를 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작업장 서측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주변에 토사유입방지 조치가 미흡하니, 맨홀내부 및 관로에 유입된 토사는 제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.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현장 동측 건물 인접구간에 수도 배관 단수조치가 미흡하여 수돗물이 작업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고 조치하기 바람.

